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 ○「공직자윤리법」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등 관련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.
2. 주요내용
 ○ 위원회 구성대상 확대(안 제2조제1항)
 - 현 조례 :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--위촉
 - 개정(안) :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--위촉

 ○ 위원회 기능 확대(안 제5조제2항)
 -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
 ·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하는 것을 제한
 - 퇴직공무원의 업무취급 제한에 대한 승인
 · 모든 퇴직공무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재정보조, 인·허가, 검·감사, 조세부과, 계약 등 업무 취급 제한
 ·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취급한 재정보조, 인·허가, 검·감사, 조세부과, 계약 등 업무를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퇴직후 2년간 업무취급 제한
3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
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 다. 기 타
 1) 입법예고 : 2015. 10.8. ~ 10.28(20일간)
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 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조”를 “제9조와 제2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풍부한 자”를 “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차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직무를 통할한다”를 “업무를 총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고가 있을”을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”를 “조사의뢰 및 같은조”로, “의뢰의”를 “의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

4. 법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

5.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

제8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”를 “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제9조와 제21조 ----------.
제2조(구성 및 선임방법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,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성주군의회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	제2조(구성 및 선임방법) ① ----------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	제3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----------, 한 차례만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	제4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----- 업무를 총괄한다.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 ---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--------.
제5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 (생 략)	제5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② ----------. ----------.
1.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	1. ---------- 조사의뢰 및 같은조 ---------- 의뢰 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	3.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
4. 법 제24조의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	4. 법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
<신 설>	5.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.	제8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----------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